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968
------------	------

2017년 9월 1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7년 9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본부장 고흥석)

가. 제안이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변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지역과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으로 지정하고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 시 시행할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 조치 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 및 위임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의 부설 주차장 이용제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2조)
- 탄력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주차장유료화, 주차부제, 승합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을 실시할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을 따르도록 함(안 제 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원안 의결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 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현재 갈등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17. 4. 13. ~ 5. 4.)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¹⁾ 지정할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이 명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에 현재 규정하고 있는 ‘2부제·5부제·10부 등의 주차부제’ 외에 추가로 ‘부설주차장 유료화, 승합자동차²⁾ 주차장 설치 및 주차장 축소 등’의 교통수요 관리 사항을 새로이 포함시키는 한편 각 조치에 대한 세부 운영 방법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계획으로³⁾ 정하도록 하는 것임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하며, 이하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라 한다)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0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이 그 지역을 통과하거나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5킬로미터 미만인 상태(이하 “혼잡시간대”라 한다)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21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물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물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2. 제1호에 따라 혼잡시간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의 혼잡시간대 중 1회 이상의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승합자동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가 해당됨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3조(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등의 수립)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수립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및 세부 시행계획(해당 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주차 여건 개선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 및 교통혼잡의 원인자를 일정 부분 규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변 통과 교통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

다만, 과도한 규제가 행해질 경우 해당 구역 또는 시설물에 대한 경제활동 위축과 이용 시민들에 대한 통행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각 교통수요관리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우선, ‘부설주차장의 유료화’와 ‘주차부제’는 법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고, 기존 부설주차장의 운영 측면에서만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 발생 및 민원 발생의 소지가 적다 할 것임

※ 참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제48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또는 주차부제(駐車部制)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반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시 ‘승합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또는 ‘주차장 축소’ 등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령할 경우 기존 주차장을 물리적으로 변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수요관리 방법은 법상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 밖에 부설주차장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경우 규제의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물 소유주와 이용 시민들이 이를 수용하는데 저항이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한편, 서울시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그간 단 한 번도 지정하지 않았는바, 우선 법상 직접적으로 명시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향후 지정·운영 후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 및 교통혼잡의 원인자를 규제함으로써 주변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과도한 규제시 경제활동 위축과 이용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승합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와 ‘주차장 축소’는 주차장을 물리적으로 변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부설주차장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는 규제의 사항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조례안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는 것임

나. 수정 주요골자

- 동 개정조례안의 제22조제1항 중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함 (안 제22조제1항)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관련 1968
----------	---------

제안년월일 : 2017년 9월 1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 및 교통혼잡의 원인자를 규제함으로써 주변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과도한 규제시 경제활동 위축과 이용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승합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와 ‘주차장 축소’는 주차장을 물리적으로 변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부설주차장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는 규제의 사항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조례안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 가. 동 개정조례안의 제22조제1항 중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함
(안 제22조제1항)

3. 참고 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 개정조례안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2. 주차부제의 실시. 단,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등은 제외

② 제1항 각 호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하는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등)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을 둘러싼 어느 한 도로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는 제외한다.</p> <p>1. 10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E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11, 21일 운행제한 한다.</p> <p>2. 5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6, 11, 16, 21, 26일 운행제한 한다.</p> <p>3. 2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F이하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짝수인 경우 홀수일 운행제한, 단 31일은 포함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 부설주차장의 유료화</p> <p>2. 주차부제의 실시. 단,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등은 제외</p> <p>3.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승합자동차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 공간 마련</p> <p>4. 그 밖에 주차장 축소 등 부설주차장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p> <p>② 제1항 각 호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하는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p>	<p>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2. 주차부제의 실시. 단,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등은 제외
- ② 제1항 각 호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하는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u>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을 둘러싼 어느 한 도로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는 제외한다.</u></p> <p>1. 10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E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11, 21일 운행제한 한다.</p> <p>2. 5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6, 11, 16, 21, 26일 운행제한 한다.</p> <p>3. 2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F이하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짝수인 경우 홀수일 운행제한, 단 31일은 포함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① <u>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u></p> <p>1. 부설주차장의 유료화</p> <p>2. 주차부제의 실시. 단,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등은 제외</p> <p>② 제1항 각 호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하는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p>